

<p>6일자로 동법시행규칙 별표 19의 수수료 산출기준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동 위원회에 공사설계 등 심의요청한 자에 대한 심의수수료를 현행과 같은 동일한 수준으로 하여 조례에 명시하려는 내용으로써, 이는 건설기술관리법 제40조의 2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p> <p><b>다. 종합의견</b></p> <p>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 규정 내용을 일치시키는 한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추가로 신설함으로써 1종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유지관리와 안전성을 확보하고, 또한 건설공사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주자와 시공자간 발생되는 건설분쟁을 효과적으로 대처하여 계획공정내 공사가 준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p> <p><b>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b></p> <p><b>5. 토론요지 : 「없음」</b></p> <p><b>6. 심사결과 : 「원안가결」</b></p> <p><b>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b></p> <p><b>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b></p> <p>.....</p> <p>서울특별시성수대교사고에 따른사상자보상금지급 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r> <td style="padding: 2px;">의안 번호</td><td style="padding: 2px;">571</td><td style="padding: 2px;">2000년 5월 일 건설 위원회</td></tr> </table> <p><b>1. 심사경과</b></p> <p>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4월 12일, 서울특별시장 제출</p> <p>나. 회부일자 : 2000년 4월 17일 회부</p> <p>다. 상정일자 : 제119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 (2000년 4월 28일 상정 의결)</p> <p>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건설국장 장석호)</p> <p>가.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성수대교사고에 따른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는 19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p>	의안 번호	571	2000년 5월 일 건설 위원회	<p>봉괴로 발생한 사상자에 대해 국가배상법상의 배상금 외에 유가족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고자 제정(1994. 12. 24) 되었으나 특별위로금지급이 완료되어 동조례의 존치실익이 상실되었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p> <p><b>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용훈)</b></p> <p>서울특별시성수대교사고에 따른사상자보상금지급조례는 19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 봉괴로 발생한 사상자에 대해 국가배상법상의 배상금 외에 유가족에게 특별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시민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해 1994년 12월 24일 제정되었으나 유가족에 대한 특별위로금 지급이 완료됨에 따라 동 조례를 존치해야 할 실익이 없어졌으므로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p> <p><b>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b></p> <p><b>5. 토론요지 : 「없음」</b></p> <p><b>6. 심사결과 : 「원안가결」</b></p> <p><b>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b></p> <p><b>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b></p> <p>.....</p> <p style="text-align: center;"><b>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b></p> <p>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b>제3조제1항제1호중 “영 제39조제2항 각호의1”</b> 을 “영 제1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조같은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조같은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4. 영 제21조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1종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p> <p><b>제3조제2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조같은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b></p> <p>2. 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설계·시공 등의 분쟁에 관한 사항</p> <p><b>제6조제1항제1호중 “영 제39조제2항제1호”</b> 를 “영 제19조제2항제1호 가목”으로 하고, 같은조같은항제2호중 “영 제39조제2항제2호”를 “영 제19조제2항제1호 나목”으로 한다.</p> <p>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①법 제4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건설공사설계 등의 심의를 요청하는 자에 대하</p>
의안 번호	571	2000년 5월 일 건설 위원회		